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502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(2640)

‘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(MMP)를 이용한 도로포장 부분보수 공법’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9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(주)대능		
	주 소	우17098,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77번길 87(영덕동)		
	전화번호	031-8005-6270	팩스번호	031-275-9983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(주)회정건설		
	주 소	우17098,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77번길 87,3층 302호(영덕동)		
	전화번호	031-8005-6270	팩스번호	031-275-9983
신청인(3)	법인명(성명)	위성환(		
	주 소	우17035,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5번길 60, 세종그랑시아 101동 303호(영덕동)		
	전화번호	031-8005-6270	팩스번호	031-275-9983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799호
- 명 칭 :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(MMP)를 이용한 도로포장 부분 보수공법
- 기술분야 : 토목 > 도로 >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
- 신기술의 내용
이 신기술은 골재와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투입한 드럼을 회전하면서 간접가열 방식으로 가열 및 혼합할 수 있는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(MMP)를 이용하여, 현장에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여 도로포장을 부분 보수하는 공법이다.
- 신기술의 범위
현장에서 골재와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혼합 및 가열할 수 있는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(MMP)를 이용한 도로포장 부분보수 공법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2016.10.17~2030.10.16.(14년)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 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 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 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